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참 조 조 문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7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4. 3 선고 2001나409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A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정C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BB)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4. 3. 선고 2001나4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정DA의 소유이었는데 1971. 12. 18.자로 1959. 3. 1.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망 정DA이 위 매매일자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인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주장이 피고가 직접 망 정DA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망 정DA으로부터 매수한 피고의 아버지 망 정DB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라고 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 것은 아니다.

한편, 원심은 위의 판단에 앞서, 원고는 망 정DA이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 이전인 1958. 6.

24.(음력)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일자(1958. 10.) 이전에 위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이 등기부상 매매일자 또는 피고 주장의 매매일자 이전에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